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71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한정애·김준형·서영교

송옥주 • 민형배 • 김주영

김재원 • 김영배 • 정성호

박홍근 · 남인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, 입법활동비, 특별활동비, 입법 및 정책개발비등이 지급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.

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 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, 수당 등의 지급 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 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 고, 무죄·면소·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수당 등 지급 제한) ①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수당, 입법활동비,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수당등"이라 한다)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, 면소,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당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구금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3조의2(수당 등 지급 제한) ①
	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
	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
	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
	에 따른 수당, 입법활동비, 특
	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
	비(이하 이 조에서 "수당등"이
	라 한다)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	②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, 면
	소,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
	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
	라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
	소급하여 지급한다.